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 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②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 및 일임재산(이하 '투자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경과한 정보
  3.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투자자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단, 당사의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정보의 종류 : 아래 업무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한다.

1. 고유재산운용
2. 투자자재산운용
3.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3. 거래주의·제한 목록 지정 기준

-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 ①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정보교류통제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6.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②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 한 법인의 특정 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5.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
  2. 사무공간 분리,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5. 교육·게시 의무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